

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
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**중대한 고지사항**으로
래 질문에 대해 **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**하시기 바랍니다. **만약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**

<유의사항> 만약 중대한 고지사항인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**보험가**
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**보험금 지급을 거절**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내 용

1	『"소상공인기본법" 제2조,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 2항』에서는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수를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. 피보험자의 상시 근로자수(아르바이트 제외)가 기준 미만입니까?
2	『"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" 제8조 1항』에서는 주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뒷면 별표1과 같이 제한합니다. 피보험자의 연평균 매출액이 기준 미만입니까?

<별표1>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구분	주요 업종	규모 기준	구분	주요 업종
1	식료품 제조업	연평균 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23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2	음료 제조업		24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
3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	25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4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	26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5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27	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
6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	28	그 밖의 제품 제조업
7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29	건설업
8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30	운수 및 창고업
9	1차 금속 제조업		31	금융 및 보험업
10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	32	도매 및 소매업
11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33	정보통신업
12	전기장비 제조업		34	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제외한다)
13	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35	부동산업
14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36	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15	가구 제조업		37	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
16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	38	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17	수도업		39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
18	농업, 임업 및 어업		40	숙박 및 음식점업

19	광업	연평균 매출액등 80억원 이하	41	교육 서비스업
20	담배 제조업		42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21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	43	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
22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		

본 체크리스트는 계약자 본인이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알고 확인한 후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으며, 허위 또는 과실에 해당되어 **보험금지급이 제한**될 수 있고, 보험회사는 **계약해지 또는 취소**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보험계약자：이경환 (전자서명) /

[전자서명 인]